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관 세 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목 차

I. 통관 일반

1. 해외 직구 유형	1
2.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2
3. 목록통관 배제 품목	3
4. 자가사용 인정기준	4
5. 합산 과세 제도	5
6.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6

II. 개별물품 통관 방법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8
3.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하나?	9
4. 총포, 도검 통관 방법은?	9
5. 향수의 면세 기준은?	9
6. 화장품의 통관 방법은?	10
7.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11
8. 담배의 면세 기준은?	11
9.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1

III. 기타 FAQ

1.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12
2.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 조회 방법은?	13
3. 예상세액 계산 방법은?	14
4. 무료 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 방법은?	15
5.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15
6.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된 경우 어떻게 하나?	15
7.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	16
8. 면세 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	16

I. 통관 일반

1 해외 직구 유형

□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2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목록통관 배제 품목

-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번호	구분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짜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악세사리 등
8	식품류 · 주류 · 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주류 · 담배 등
9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수하인주소지 ·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별표 6의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3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4

자가사용 인정 기준

□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 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항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의약품		총6병(6병 초과 시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시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향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기호물품	주류 퀄런 엽퀄런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 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	
<p>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color: #f0f0f0;">물품가격</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70C0; font-weight: bold;">+</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color: #f0f0f0;">발송국가 내 세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70C0; font-weight: bold;">+</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div> <p>(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150불 초과</div>  <p>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 시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p>

II. 개별 물품 통관 방법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종 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 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의약품	총 6병 (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 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

2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The screenshot shows the 'Prohibited Food List' (위해식품 차단목록) page on the KFDA website. The page includes a search bar, navigation tabs, and a table of prohibited products. The table has the following columns: 번호 (Number), 제품명 (Product Name), 제조사 (Manufacturer), 검출성분 (Detected Ingredients), 제조국가 (Country of Origin), and 등록일 (Registration Date).

번호	제품명	제조사	검출성분	제조국가	등록일
1	u-dream full night	Biotrade Canada Ltd	eszopiclone 및 zopiclone 유사물질	캐나다	2019-12-20
2	u-dream lite	Biotrade Canada Ltd	eszopiclone 및 zopiclone 유사물질	캐나다	2019-12-20
3	supreme testosterone booster	T-Boost Pharm Ltd	Testosterone	불가리아	2019-12-18
4	colonew	BioSource Labs	senoside	미국	2019-12-05
5	leptin detox	Power by Naturals	Slippery Elm Bark	미국	2019-11-26

3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총포·도검 통관 방법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향수의 면세 기준은?

-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7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8

담배의 면세 기준은?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껴련 200개비, 엽껴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9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III. 기타 FAQ

1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입물품신고 해외직구물품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
조회

해외직구가 처음이신가요?
수입물품신고가 처음이신가요?
신규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용가이드
24시간 365일 챗봇상담
1:1채팅 카톡상담
pc사용자를위한 원격지원
관세청과 검찰청, 마약 차단 위한 국제 공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 ☎ 1544-1285 (평일) 08:00 ~ 20:00 / (토·일, 공휴일) 08:30 ~ 17:30
Copyright©Korea Customs Service. All Rights Reserved.

2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 조회 방법은?

- 해외직구 물품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 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 그 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해외직구 예상세액 및 해외직구 FAQ 등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정보조회]

해외직구 여기로!

개인이 수출입한 물품의 통관정보를
알기 쉽게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 해외직구 정보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해외직구 FAQ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 확인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	 구매대행업자 등록안내	 해외직구(전자상거래) Q&A

▶ 해외직구 지식정보

 행복한 관문 해외직구 이야기 (관세청 블로그)	 Food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정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	--	---

3

예상세액 계산방법은?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액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예시	세액 계산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3%) + ②부가가치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담배 (1보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4,534원 - 세액 114,534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40%) + ②개별소비세 5,940원 + ③부가세 28,594원((과세가격+①+②) × 부가가치세율 10%)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 ③) × 부가세율 10%)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예 : FTA 협정 관세)에 따라 달라짐

※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해외직구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하면 면세가 가능(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

7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

-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 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가이드 > '해외 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8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해도 되나?

-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추가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예)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 외 판매가 불가